

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
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□ 존경하는 김인제 도시관리계획위원회 위원장님

그리고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!

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

송 재 혁 의원입니다.

□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

「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
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
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.

□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

□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

현수막 바탕색 사용과 관련하여 “특별한 사유”라는 애매한 예외
규정을 두고 있어 일반 시민들에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근거

가 되고 있으며, 인쇄에 사용하는 색은 대부분 혼용색으로 빨강·파랑·노랑 등으로 구분되지 않아 판단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.

□ 또한, 『바탕색은창문을 막아서는 아니된다.』는 내용은 문장의 수식관계가 옳지 않으므로 어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
□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며, 본 개정안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아무쪼록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

□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